

천일염 위생과 관련한 논란,
VOD 중지 및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01

A 방송은 천일염 생산 환경의 위생 및 안전성 논란에 대해 개최된 공개토론회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천일염 관련 조합과 조정대상보도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된 모 염전은, 천일염은 식품공정의 관리기준을 적용받아 생산되는 안전한 식품이며 생산환경도 위생적으로 관리된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양수산부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천일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신청인 주장에 관한 반론보도문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시보기(VOD) 재생 및 IPTV, 케이블TV에서의 재방송을 중지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정부가 발송한 공문에 대한
해석 논란,
반론보도로 직권결정

02

B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공문을 통해 지자체에 지원금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자체 간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성이 있는 1,496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검토 및 정비를 '권고' 했을 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지원금을 특정해 중단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고, 이 지원금은 이미 피신청인의 보도 이전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유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공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반론보도문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명시적인 촬영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초상을 공개한 보도,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03

C 방송사는 아파트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데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동대표의 횡포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미용실의 전경 및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하여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명시적인 촬영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C 방송사가 편집 상 실수로 신청인의 신상이 노출된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 점, 노출된 시간이 짧아 신청인이라고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의 항의를 전달 받고 곧바로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일부 조정하여 100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양당사자들에게 권유했다. 이에 양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 핸드북 발간



위원회는 최근 취재현장에서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형태로 담은 핸드북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실명보도 기능 여부’,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 ‘위장취재 문제’ 등 기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봤을 내용이 64개 문항으로 정리돼 수록되어 있다. 핸드북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도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언론 사람』 뉴스레터 발행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달 발행하는 『언론  사람』이 올해부터 뉴스레터로도 발행됩니다.

수신을 원하시면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신청해주세요

